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참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ej.com /police

01. 다음 중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약 밀수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으나 정작 마약 밀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② 태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 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유럽 국가에 이송하기로 모의하였으나 이를 포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일본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일본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 형사사건으로 필리핀 법원에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 받을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형의 산업의 대상이 아니다.

02.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살인죄에 있어서 범인이 칼로 찌른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가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03.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승낙의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③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철회한 경우 이전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위법성의 조각되지 않는다.

04.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인이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자진해서 응해주겠다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하자 강간을 포기한 경우, Frank 공식에 따르면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범인이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그의 부모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돌려보냈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성립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밀수를 하려던 자가 범행 당일에 미리 체포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범자 중 1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의해 실제로 결과가 방지된 경우, 중지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는 불능미수가 된다.

05.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② 공범자가 포괄일죄의 범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이때 공범자는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공문서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때 이탈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0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중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공동피고인 중에서 1인의 증거동의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참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ej.com /police

07.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 ③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④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08.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부동산 소유자 甲이 A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회사직원인 甲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하는 경우,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 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④ 甲이 알 수 없는 경위로 A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09.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 ㉡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그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 주택에 방화를 하였는데,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 ③ 파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 ④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득액의 산정에서 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으나, 경합범은 그 액수를 합산한다.
- ② 회사사장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이 해당한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중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행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12.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받아놓은 백지약속어음에 발행일, 금액, 수취인 변경을 함부로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청구 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로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에 甲이 乙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甲은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참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ij.com /police

13.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주류회사 이사인 甲은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분쟁 중에 A의 착오로 위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4,7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A로부터 해당 금액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甲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설령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방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은행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범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되진 못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상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 ②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에 따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상해죄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 ④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6. 다음 <보기> 중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 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7.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③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그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허용된다.
- ③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 제가가 무효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의 신의칙에 따라 수사 기관이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참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ij.com /police

형사법 (문제)

10/19(토) 시행

19.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영미법상 판례에 의해 확립된 증거법칙으로서 일반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20.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그 차용한 원금이 뇌물이 된다.
- ③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은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참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ij.com /police

01. [정답] ④

[해설]

- ① (X)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8도2734)
- ② (X)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 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같은 죄의 예비·음모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X)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④ (O)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다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도5977 전합)

02. [정답] ②

[해설]

- ① (O)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도16948)
- ② (X)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3도3612)
- ③ (O)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든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86도1048)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인정
- ④ (O) 피고인이 교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96도529)

03. [정답] ①

[해설]

- ① (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인출행위를 현금카드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95도1728)
- ② (X) 승낙의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하지만 민법상 행위능력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X)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0도9962) 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승낙을 철회한 경우에는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20.순경1차)
- ④ (X)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도1545)

04. [정답] ④

[해설]

- ① (O)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93도1851)
- ② (O)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려보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물요구죄는 기수가 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이 어떠한 간에 중지미수나 장애미수니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한다.(대법원 78도1418)
- ③ (O)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85도2339)
- ④ (X) 공범의 경우 중지미수는 자신의 중지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범행까지도 중지시켜야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이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지만 중지미수가 되고,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참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ej.com /police

05. [정답] ③

[해설]

- ① (X)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도1274)
- ② (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97도163)
- ③ (O)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80도907)
- ④ (X)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85도2371)

06. [정답] ③

[해설]

- ① (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86도893)
- ② (O)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제2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이들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도3)
- ③ (X)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동의를 효력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④ (O) 증거동의를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판례)

07. [정답] ①

[해설]

- ①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도6349)
- ② (O)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4도1494)
- ③ (O)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도4166 전합)
- ④ (O)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92도917)

08. [정답] ④

[해설]

- ① (O)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도1490)
- ② (O)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기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93도2206)
- ③ (O)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9도334)
- ④ (X)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甲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도9789)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침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ij.com /police

09. [정답] ①

[해설]

- ㉠ (X)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도1253)
- ㉡ (O)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도5979)
- ㉢ (O)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지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7733)
- ㉣ (O)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경범죄 처벌법상 이른바 '과다노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도8805)

10. [정답] ③

[해설]

- ㉠ (X)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67도925)
- ㉡ (X) 타인소유에 속하는 경우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자기소유로 취급되고,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소유로 취급된다.
- ㉢ (O)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제170조 제2항)
- ㉣ (X)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도6641)

11. [정답] ①

[해설]

- ㉠ (X)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범의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도1899)
- ㉡ (O)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11도7229)
- ㉢ (O)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도19772)
- ㉣ (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중공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도4459)

12. [정답] ④

[해설]

- ㉠ (O)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7도2922)
- ㉡ (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바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설사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90도577)
- ㉢ (O)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78도1904)
- ㉣ (X)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도9494)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참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ij.com /police

13. [정답] ②

[해설]

- ① (O)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98도4088)
- ② (X) 주류업체 甲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甲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이 착오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甲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甲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1도2088)
- ③ (O)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도5014)
- ④ (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자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범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17494 전합)

14. [정답] ④

[해설]

- ①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도81)
- ② (O)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제3항)
- ③ (O)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 ④ (X)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수사준칙 제36조 제2항) 2023. 11. 1. 개정

15. [정답] ②

[해설]

- ① (O)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대법원 82도2588)
- ② (X)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도1039)
- ③ (O)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3도524)
- ④ (O)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9도3910)

16. [정답] ②

[해설]

- ㉠ (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 ㉡ (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4)
- ㉢ (O)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게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 ㉣ (O)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규칙 제96조의16 제3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규칙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16 제4항)
- ㉤ (X)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9항)

노량진(02) 826-2000	전북(063) 272-9946	광주(062) 529-0600	신림(02) 2135-8112
제주(064) 722-8140	참수리(경기광주) 1599-9361	온라인(02) 815-2000	miraeij.com /police

17. [정답] ③

[해설]

- ① (O)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도1586)
- ② (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도1452)
- ③ (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도1839 전합)
- ④ (O)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질 고유권이다. 따라서 실명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도10729)

18. [정답] ④

[해설]

- ① (O)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94도252)
- ② (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1066)
- ③ (O) 경찰관들이 노래방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단속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도7362)
- ④ (X)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아청법 제25조의2 제1항)

19. [정답] ②

[해설]

- ① (O) 따라서 사람의 욕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9843)
- ② (X)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08조의2)
- ③ (O)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4도10978 전합)
- ④ (O) 피고인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甲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마친 후 예우 차원에서 바로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甲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甲이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탁자 위에 놓아두고 甲이 乙, 丙 등과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폰 녹음 기능을 통해 몰래 녹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도15616)

20. [정답] ③

[해설]

- ① (X)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도1060)
- ② (X)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75도3607)
- ③ (O)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9659)
- ④ (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약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94도2528)